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 FAQ

2026. 04.

기후에너지환경부

목 차

I. 대상 공영주차장	1
1. 금번 실시하는 공영주차장 5부제의 경우, 유료 및 무료 주차장 모두에 적용되는지?	1
2.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부설주차장과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1
3. 정부청사 주차장, 공공기관 주차장(부설주차장 포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방문하는 차량에 대해 승용차 5부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1
4.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지침 중 대상 공영주차장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중 공공기관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하지 않으면 5부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인지?	2
5.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도 무료 주차장이면 5부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2
II. 제외대상 공영주차장	3
6.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도 5부제 적용을 받는지?	3
7.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주차장 이용도 제한되는 것인지?	3
8. 대중교통 열악지역에 위치한 공영주차장도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되는 것인지?	3
9. 지역 관광지 등 대중교통 이용은 어렵고, 차량이용 고객이 대부분인 지역에도 승용차 5부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4

- 10. 마트·복합시설 등 큰 시설의 주차장은 승용차 5부제를 적용하지 않고, 공영주차장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주차 불편으로 전통시장 등의 이용률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4
- 11.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도 적용되는지? 5
- 12. 평일 국립공원 주차장도 적용 대상인지? 5
- 13. 다중이용업소(상가) 밀집 주변 공영주차장 주변 상권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5
- 14. 주택가의 공영주차장을 월단위 주차비로 주차하고 있는 경우, 5부제에 해당하는 날에는 차를 출차하고 다음 날에 다시 주차하여야 하는지? 6
- 15. 대중교통 이용으로 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5부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6
- 16. 평일 행사 또는 엑스포를 진행하는데 주변 공영주차장은 해당 일에 한시적으로 5부제 제외 가능한지? 6

III. 시행시간 7

- 17. 5부제 적용 대상 차량의 주차장 진입 제한 시간(운영시간)은? ... 7
- 18. 노상 공영주차장의 경우 운영시간 이외는 무료로 개방하며 해당 시간에는 5부제 적용이 제외되는 것인지? 7

IV. 제한대상 차량 8

- 19. 리스, 렌트카 등의 차량에도 일반 차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8
- 20. 외국인이 차를 렌트해서 5부제에 가로막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 8
- 21. 승합차, 트럭, 버스 등 승용차 외의 차종은 적용 대상이 아닌 건지? .. 9
- 22. 자녀 학원 승하차 등 주차장에 짧은 시간동안 주차할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9

V. 제외대상 차량 10

- 23. 긴급한 업무(병원 진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가 필요한 경우 예외 인정이 가능한지? 10
- 24. 생계형 자동차의 판단 기준은? 10
- 25. 행사차량 등 특수 용건의 차량인 경우 제외 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11
- 26.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의 경우 미취학 아동이 탑승하고 있어야만 공영주차장 이용이 가능한지? 현재 탑승하고 있지 않아도 제외 가능한지? 11
- 27. 개인간 직거래, 잠깐의 물건 하차 등으로 인해 공영주차장에 입차한 상황도 예외 없이 바로 회차해야 하는지? 회차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12
- 28. 장애인차량, 유아동승차량 등 예외차량은 아니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신 차량도 예외없이 적용되는지? 12
- 29. 봉사활동으로 인한 공영주차장 이용은 공익을 위해서인데 5부제에서 제외 가능한지? 13
- 30. 장애인(동승포함), 미취학 유아동승, 임산부(배지착용), 신분증 제시(의료, 보도, 경찰 등) 등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제외 사유인 경우 신청서만 제출해도 되는지? 꼭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13
- 31. 택배 또는 배달 등의 단기간 주차 차량의 경우에도 5부제를 적용하는지? 13

VI. 출입제한방법 14

- 32. 임시 번호판 부착 차량의 요일 판정 기준은? 14
- 33. 주차장 만차 여부와 관계없이 5부제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는 차량은 입차가 차단되는 것이 원칙인지? 14

- 34. 5부제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는 차량이 입차를 강행할 경우, 시설 관리자에게 부여된 법적제재 권한이 있는지? 15
- 35. 전일 입차하여 주차 중인 차량이 당일 5부제에 해당할 경우, 출차가 가능한지? 15
- 36. 공공 체육·문화시설의 외부 강사의 경우 강의 시간에 따라 선택요일제 등 5부제의 유연성을 적용할 수 있는지? 15

VII. 시행방법 16

- 37.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계획과 이행결과는 어디로 제출하는지? .. 16
- 38. 유아동승 등 예외차량에 대한 확인 방법은? 16
- 39. 유료 공영주차장의 경우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유아동승 관련 서류를 누구에게 제출하고 입장할 수 있는지? 17
- 40. 제외차량 신청서는 공영주차장에 비치되어 있는지? 공영주차장에서 신청서 제출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무인 주차장의 경우에는 어디에 제출하는지? 17
- 41. 비표 발급 주체는 주차관리업체, 지방정부, 기후부 중 어디인지? 어디의 직인이 찍혀야 하는건지? 18
- 42.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은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이를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지침과 계획서가 있는지? 18
- 43. 지방 기관은 현장 감독할 인원을 충당할 때까지 제도 기간을 시행할 수 있는지? 18

VIII. 이행지원 19

- 44.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는데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증차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19
- 45. 사기업에도 유연근무 독려 공문 및 참여기업에 대한 혜택 등을 고려해줄 수 있는지? 19

IX. 문제상황 발생 시 20

- 46. 5부제 안내 미비를 이유로 발생한 회차 비용이나 유류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20
- 47. 입차 거부 과정에서 차량 정체로 인한 2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판단 여부는? 20
- 48. 공영주차장 이용 불가로 인해 발생하는 인근 지역 불법주차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21
- 49. 인근 지역 불법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주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21
- 50. 공영주차장 이용 불가로 인해 주변 민영주차장의 요금인상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21
- 51. 긴급차량의 골목 통행에 불법주차 문제 발생으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지? 21
- 52.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으로 주변 아파트 주차장에 입주자가 아닌 차량이 주차한 경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22
- 53. 무인 공영주차장에 입차 불가 차량이 입구 앞에서 정지하는 경우 대처 방안이 있는지? 22
- 54.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차를 시도하여 주차장에 들어가 있는 경우 어떤 대응 방안이 있는지? 23
- 55. 이중주차로 발생하는 사건에 견인과 같은 대응 방안이 있는지? 23
- 56. 노상 공영주차장에 5부제 위반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고지 방법은? 장기 주차차량의 경우 입·출차만 아니면 5부제에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24
- 57. 5부제 차량으로 입차를 제한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입차를 시도하는 차량에 대하여 차단기를 열어줬을 경우, 공영주차장에 패널티가 있는지? 24

X. 기타 25

- 58. 정기권 차량이 5부제 해당 요일에 차량을 출차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25
- 59. 월 정기권 이용자의 경우, 5부제 적용으로 인한 미이용 일수만큼 요금 할인이 가능한지? 또는 5부제를 시행한 날로부터 이용기간 만료일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25
- 60. 공영주차장에 5부제 시행으로 운영 요금 변동을 할 의사가 있는지? 26
- 61. 민간 5부제 시행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 요금을 인하할 계획이 있는지? 26

대상 공영주차장

- 1 금번 실시하는 공영주차장 5부제의 경우, 유료 및 무료 주차장 모두에 적용 되는지?

<답 변>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5부제 실시 대상에 포함되며, 무료 주차장은 대상이 아님

- 2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부설 주차장과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답 변>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노상/노외주차장이 5부제 실시 대상이 되며 공공문화·체육시설의 부설주차장도 해당됨

- 3 정부청사 주차장, 공공기관 주차장(부설주차장 포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방문하는 차량에 대해 승용차 5부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답 변>

- 정부청사, 시청 등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은 공영주차장에 해당하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지침에 따라 은 민원인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지침'에 준하여 승용차 5부제를 적용함

4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지침 중 대상 공영주차장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노상 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중 공공기관장이 지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지정하지 않으면 5부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인지?
---	---

<답 변>

- 공공기관이 운영중인 유료 노상/노외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시행 대상이며
-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장이 제외할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지 않은 주차장을 시행대상인 주차장이 됨
- 공공기관장은 지도정보 제공업체에 시행하는 주차장 정보를 입력하여 주민들이 검색할 경우 시행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해야 함

5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도 무료 주차장이면 5부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	---

<답 변>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무료 주차장은 통상 출입관리를 하지 않으므로 대상이 아님

6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도 5부제 적용을 받는지?

<답 변>

-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에 해당하지만,
- 주차공간이 없는 주민 등이 주거를 위해 필수적인 공간이라는 점, 차량운행 자제와 무관한 점을 감안하여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7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주차장 이용도 제한되는 것인지?

<답 변>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유료 노상/노외주차장은 원칙적으로 5부제 실시 대상에 포함
- 다만,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필요한 주차장 (예: 인천공항 주차장)은 공공기관에서 판단하여 예외로 할 수 있음

8 대중교통 열악지역에 위치한 공영주차장도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되는 것인지?

<답 변>

- 교통량이 많지 않아 5부제 시행 효용성이 적은 지역의 주차장은 공공기관장이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9	지역관광지 등 대중교통 이용은 어렵고, 차량이용 고객이 대부분인 지역에도 차량 5부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행사 등 지역축제가 많은 봄철에 관광객 유치 등 차질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	--

<답 변>

- 관광지 공영주차장, 전통시장 공영주차장과 같이 해당지역 경제활동에 주차장이 필수적인 요소인 경우는 5부제를 시행 대상에서 제외하기를 권고함
- 지역축제의 경우도 축제기간에 한정하여 제외 권고

10	마트·복합시설 등 큰 시설의 주차장은 5부제 적용하지 않고, 공영주차장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주차 불편으로 전통시장 등의 이용률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	---

<답 변>

- 공영주차장 5부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출입 일부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차량 운행을 자제시키기 위한 목적임
 - 따라서 민간의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트, 복합시설에 대한 제한과는 성격이 다름
-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의 핵심 시설이므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11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도 적용되는지?
----	--

<답 변>

- 공공기관장은 5부제에 따른 광역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을 5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12	평일 국립공원 주차장도 5부제 적용 대상인지?
----	---------------------------

<답 변>

- 관광지 주변 주차장 등은 공공기관장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제외가 가능함

13	다중이용업소(상가) 밀집 주변 공영주차장 주변 상권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	---

<답 변>

- 전통시장, 핵심 상가 등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은 공공기관장이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14	주택가의 공영주차장을 월단위로 주차비로 주차하고 있는 경우, 5부제에 해당하는 날에는 차를 출차하고 다음 날에 다시 주차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은?
----	---

<답 변>

- 주택가 공영주차장은 주차 공간이 없는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민 거주에 필수적이고 또한 운전자제 목적과도 맞지 않으므로 제외를 권고함

15	대중교통 이용으로 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5부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	--

<답 변>

- 공공기관은 민원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기관 방문에 어려운 사정이 이해가 될 경우, 부설주차장에 대해 민원인 5부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음

16	평일 행사 또는 엑스포를 진행하는데 주변 공영주차장은 해당일에 한시적으로 5부제 제외 가능한지?
----	---

<답 변>

- 행사, 관광지 등 공공기관의 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차장은 기간을 정해 시행대상에서 제외 가능

17 5부제 적용 대상 차량의 주차장 진입 제한 시간(운영 시간)은?

<답 변>

-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에 따른 출입제한은 운영시간 외에는 관리가 곤란하므로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적용됨

18 노상 공영주차장의 경우 운영시간 이외에는 무료로 개방하며 해당 시간에는 5부제 적용이 제외되는 것인지?

<답 변>

-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에 따른 출입제한 차량은 주차장 운영시간 동안에만 출입이 제한되며,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에는 출입이 가능

19	리스, 렌트카 등의 차량에도 일반 차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	---------------------------------------

<답 변>

- 승용차 5부제는 차량의 소유 형태(개인, 법인, 리스, 렌트 등)와 관계없이 차량번호판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일괄 적용

20	외국인이 차를 렌트해서 5부제에 가로막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	---

<답 변>

- 외국인이 운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임

21	승합차, 트럭, 버스 등 승용차 외의 차종은 적용대상이 아닌건지?
----	--------------------------------------

<답 변>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1호에따른 승용자동차가 대상이며,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다른 차종은 5부제 대상에서 원천 제외됨

22	자녀 학원 승하차 등 주차장에 짧은 시간동안 주차할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	--

<답 변>

- 짧은 시간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5부제에 따라 출입은 제한됨

23 긴급한 업무(병원 진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가 필요한 경우 예외 인정이 가능한지?

<답 변>

- 공영주차장 이용객 중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차량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장이 예외여부를 판단
- 그리고, 국립대병원 등이 운영하는 병원 부설 주차장은 5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 * 민간 병원은 공영주차장 5부제 대상이 아님

24 생계형 자동차의 판단 기준은?

<답 변>

-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기준과 차량5부제 적용여부는 개별사안별로 공공기관이 판단
- 가령 방과 후 교사가 많은 짐을 싣고 여러 학교를 다니며 수업을 해야하는 경우는 생계형 차량으로 인정할 수 있고
- 이 경우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출입을 허용하거나 차량 소유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외 비표를 발급받아 보여주는 방식으로 출입허용

25	행사차량 등 특수 용건의 차량인 경우 제외 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

<답 변>

- 공공기관장이 행사의 목적이나 운영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사기간 동안 필요최소한의 차량에 한해 출입허용 가능

26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의 경우 미취학 아동이 탑승하고 있어야만 공영주차장 이용이 가능한지? 현재 탑승하고 있지 않아도 제외 가능한지?
----	---

<답 변>

- 주차장 출입 시 미취학 아동이 탑승하고 있지 않아도, 미취학 아동의 이동을 위한 경우는 제외가 가능함
- 다만, 비표를 사전에 발급받아 관리요원에게 제시해야 함

27	개인간 직거래, 잠깐의 물건 하차 등으로 인해 공영주차장에 입차한 상황도 예외없이 바로 회차해야 하는지? 회차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	--

<답 변>

- 개인간 직거래, 잠깐의 물건 하차 등의 경우 입차가 제한됨
- 다만,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형 차량 등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의 경우 출입 허용

28	장애인차량, 유아동승차량 등 예외차량은 아니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신 차량도 예외없이 적용되는지?
----	--

<답 변>

- 특수목적 차량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이동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외 가능

29	봉사활동으로 인한 공영주차장 이용은 공익을 위해서인데 5부제에서 제외 가능한지?
----	--

<답 변>

- 봉사활동을 위한 목적이라도 원칙적으로 적용됨
- 다만, 공공기관의 장이 특별히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가능

30	장애인(동승포함), 미취학 유아동승, 임신부(배지착용), 신분증 제시(의료, 보도, 경찰 등) 등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제외 사유인 경우 신청서만 제출해도 되는지? 꼭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	---

<답 변>

- 5부제 제외 신청시 제외차량 신청서와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각각 제출해야함
- 공공기관은 해당 증빙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고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비표를 기관장 직인을 찍어 발급해야 함

31	택배 또는 배달 등의 단기간 주차 차량의 경우에도 5부제를 적용하는지?
----	---

<답 변>

- 택배, 배달 등 생계유지를 위해 10인승 이하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차량이 될 수 있으며
- 운행자는 지방정부 등 해당 공공기관에 공영주차장 5부제 제외차량 신청 후 필요한 증빙을 하고 비표를 발급받아 출입 가능

32 임시 번호판 부착 차량의 요일 판정 기준은?

<답 변>

- 임시 번호판 부착 차량도 10인승 이하 승용 자동차의 경우 5부제 적용 대상
- 임시 번호판 부착 차량도 본 시행 지침에 따라 승용차 5부제 (요일제)를 일괄 적용

출입제한 차량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월	화	수	목	금	
1, 6	2, 7	3, 8	4, 9	5, 0	

33

주차장 만차 여부와 관계없이 5부제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는 차량은 입차가 차단되는 것이 원칙인지?

<답 변>

- 공영주차장을 5부제는 요일에 따른 차량운행 자제가 목적이므로 주차장의 여유공간과 무관
- 주차장 입구에 시행안내판을 비치하고 출입차단기에 정보를 입력하여 원천적으로 진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원칙

34	5부제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는 차량이 입차를 강행할 경우, 시설 관리자에게 부여된 법적제재 권한이 있는지?
----	---

<답 변>

- 시설 관리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나,
- 입차 제한 차량이 관리자의 안내를 무시하고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영업 방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35	전일 입차하여 주차 중인 차량이 당일 5부제에 해당할 경우, 출차가 가능한지?
----	---

<답 변>

- 전일에 정상적으로 입차하여 주차 중인 차량이 당일 5부제 적용 대상이 된 경우, 기존 주차 차량의 출차는 제한하지 않음
- 다만, 해당 요일의 주차장 운영시간 동안에는 재출입이 차단됨

36	공공 체육·문화시설의 외부 강사의 경우 강의 시간에 따라 선택요일제 등 5부제의 유연성을 적용할 수 있는지?
----	--

<답 변>

- 공영주차장 5부제는 시행의 명확성 등을 위해 요일제로 운영됨
- 따라서 선택요일제는 허용되지 않음
- 다만, 외부강사가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한 경우는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비표를 발급받아 출입할 수 있음

37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계획과 이행결과는 어디로 제출하는지?

<답 변>

- 시행계획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 (<http://min24.energy.or.kr/pe>) 내 공영주차장 5부제 탭에 2026년 4월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이행결과 보고는 매월 2회(1주, 3주 수요일) 제출하여야 함.
 - 지방정부는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에 제출

38 유아동승 등 예외차량에 대한 확인 방법은?

<답 변>

- 지방정부에 등록된 장애인차량 등은 지방정부가 차단기에 정보입력, 주차요원이 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출입허용
 - * 장애인 운전 차량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 임신부, 유아동승 차량은 증명서류 또는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스티커 등을 보관하여 출입 시 제출
 - * 임신부 운전 차량 : 보건소 발급 임신부 차량 스티커
 - 유아 동승 차량 : 재원증명서(어린이집, 유치원)
- 다만, 주차요원이 상주하지 않는 주차장 출입을 위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여 제외차량 비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공공기관이 주차장 별 여건에 맞게 출입허용 방식 결정

39	유료 공영주차장의 경우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유아동승 관련 서류를 누구에게 제출하고 입장할 수 있는지?
----	--

<답 변>

- 유아동승 차량이 5부제를 시행하는 무인 공영주차장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차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미리 신청하여 비표를 받고 해당 공공기관이 해당차량 번호를 출입차단기에 입력해야 가능함

40	제외차량 신청서는 공영주차장에 비치되어 있는지? 공영주차장에서 신청서 제출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무인 주차장의 경우에는 어디에 제출하는지?
----	--

<답 변>

- 5부제 제외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공공기관에서 접수하며
- 공공기관별 접수창구 등은 사전에 문의할 필요가 있음

41 비표 발급 주체는 주차관리업체, 지방정부, 기후부 중 어디인지?
어디의 직인이 찍혀야 하는건지?

<답 변>

-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제외차량 비표는 해당 주차장 운영하는 공공기관장의 직인이 있어야함(다만, 공공기관장 여건에 따라 위탁 운영기관의 관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위탁운영기관장 직인도 가능)

42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은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이를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지침과 계획서가 있는지?

<답 변>

-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은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사용하므로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지침'에 따라 출입통제
- 민간인이 방문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지침'에 따라서 요일에 따라 해당 번호 차량은 출입 불가

43 지방 기관은 현장 감독할 인원을 충당할 때까지 제도 기간을 시행할 수 있는지?

<답 변>

- 공공기관은 인력 배치, 관리시설 설치 등에 문제로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할 수 있음
- 다만, 제외사유 등을 기재한 시행계획을 기후부에 제출해야 함

44 대중교통이용을 권장하는데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증차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 변>

-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속 검토중
- 서울 등 지방정부 별로 집중배차시간 확대 등 추진 중

45 사기업에도 유연근무 독려 공문 및 참여기업에 대한 혜택 등을 고려해줄 수 있는지?

<답 변>

- 민간에 대해서는 5부제 자율참여 원칙
 - 주요 대기업집단 및 금융권, 경제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5부제 등 시행 중
- 기후부는 5부제 시행의 편의성을 위해 유연근무를 활용한 출퇴근 시간 분산 등을 권고하고 있음
- 지방정부 차원에서 참여기업에는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개인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 인하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46 5부제 안내 미비를 이유로 발생한 회차 비용이나 유류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답 변>

-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주차장 입구 등에 승용차 5부제 시행을 안내해야 하며, 안내판의 설치 형태와 위치는 주차장별 여건에 맞게 판단
- 제도의 인지 부족으로 인한 개인적 손실은 보상하지 않음

47 입차 거부 과정에서 차량 정체로 인한 2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판단 여부는?

<답 변>

-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5부제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 주차장의 입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정체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회차 방법 등 안전 조치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만약, 입차 거부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 판단여부는 주차장 관리 주체별(지방정부, 공공기관)로 시설물 관리 책임 보험 가입 범위나 현장 관리인의 과실 유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리기관에 문의하여 확인 필요

48 공영주차장 이용 불가로 인해 발생하는 인근 지역 불법 주차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답 변>

- 지방정부는 불법주차 사례가 증가하지 않도록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

49 인근 지역 불법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주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 변>

-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는 통상의 교통사로 사례로 처리 가능
- 지방정부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50 공영주차장 이용 불가로 인해 주변 민영주차장의 요금인상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답 변>

-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용납하기 어려우므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방정부, 국토부 등이 강력한 행정지도 예정

51 긴급차량의 골목 통행에 불법주차 문제 발생으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지?

<답 변>

-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회피를 목적으로 인근 지역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긴급차량이 통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할 공공기관(또는 지방정부), 경찰에 단속 협조를 요청하기 바람

52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으로 주변 아파트 주차장에 입주자가 아닌 차량이 주차한 경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	--

<답 변>

- 공용주차장 5부제는 불요불급한 차량 운행을 간접적으로 제한하기 위함이므로 주변 아파트 불법 주차와는 무관함

53	무인 공영주차장에 입차 불가 차량이 입구 앞에서 정지하는 경우 대처 방안이 있는지?
----	--

<답 변>

- 공공기관은 5부제 시행 안내판을 비치하는 등 입차불가 차량의 진입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안전사고 발생할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 주차장의 입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정체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회차 방법 등 안전 조치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인력 배치, 관리시설 설치 등에 문제로 통제가 불가능한 주차장은 시행대상에서 제외 가능

54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차를 시도하여 주차장에 들어가 있는 경우 어떤 대응 방안이 있는지?
----	--

<답 변>

- 입차가 거부된 차량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파손이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공공기관(지방정부)은 경찰 협조 등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55	주변 이중주차로 발생하는 사건에 견인과 같은 대응 방안이 있는지?
----	--------------------------------------

<답 변>

- 불법주차 사례가 증가하지 않도록 지방정부는 5부제 시행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의 불법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함

56	노상 공영주차장에 5부제 위반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고지 방법은? 장기 주차차량의 경우 입·출차만 아니면 5부제에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	--

<답 변>

- 5부제 위반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경우 불법주차단속 시스템으
이용하여 차량 소유자의 핸드폰에 문자를 보내는 방법 가능
- 그 외에 운전석 유리창에 위반경고장 등을 붙이는 방법도 가능
- 공공기관별로 5부제에 따른 출입제한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위반사실을 통지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주차장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차량
운행을 간접적으로 자제시키는 목적이므로 장기간 주차요금을
내면서 단순히 주차중인 차량은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57	5부제 차량으로 입차를 제한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입차를 시도하는 차량에 대하여 차단기를 열어줬을 경우, 공영주차장에 패널티가 있는지?
----	---

<답 변>

- 5부제에 따라 출입 제한차량을 제한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입차를
시도하는 차량에 대해 차단기를 열어주어도 공영주차장에 대한
패널티는 없음
- 다만, 공공기관이 출입관리를 부실하게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
기관에 대한 대외공표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예정

58

정기권 차량이 5부제 해당 요일에 차량을 출차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 이용권 해지 및 재가입 제한 적용이 가능한지

<답 변>

- 승용차 5부제 적용은 입차를 기준으로 하며, 5부제 시행일 이전에 정상적으로 입차하여 주차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당일 출차를 강제하거나, 이용권 해지 등의 불이익은 수반되지 않음

59

월 정기권 이용자의 경우, 5부제 적용으로 인한 미이용 일수만큼 요금 할인이 가능한지? 또는 5부제를 시행한 날로부터 이용기간 만료일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답 변>

- '26.4.8 이후 만료되는 정기권을 보유한 차량은 기간 만료일까지 출입 제한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 '26.4.2일 이후 정기권을 신규 발급·갱신할 경우 공공기관은 5부제 시행 사실을 충분히 안내하고, 해당 일자 출입 제한에 동의를 받은 후 발급하기를 권고
- 추가적으로 할인, 환불 등 정기권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주차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정부가 판단

60	공영주차장에 5부제 시행으로 운영 요금 변동을 할 의사가 있는지?
----	--------------------------------------

<답 변>

- 공영주차장의 요금과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차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정부가 판단할 사항

61	민간 5부제 시행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 요금을 인하할 계획이 있는지?
----	---

<답 변>

- 민간 5부제 시행은 논의된 바 없음
- 공영주차장 5부제는 공공기관의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민간의 차량운행을 간접적으로 자제시키기 위한 조치임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 : 070-4703-3730